
2024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24. 3.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회의명	2024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일시	2024. 3. 18.(월) 14시
회의장소	영상회의
심의위원회	제1정보공개심의회
회의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위원 정남철 위원, 이현수 위원, 노승용 위원, 전다운 위원, 지준연 위원 ○ 배석 이동판 정보공개팀장(간사), 박성미 주무관(서기)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14 : 광진구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심의도서 ○ 2024-15 : '24년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1차 공모사업 심사 결과보고(장애인복지정책과-2333, 2024.02.02.)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14 : 기각 ○ 2024-15 : 기각

1. [의안번호 2024-14] : 광진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심의도서

○ 000 위원장

의안번호 제2024-14호 건축기획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 000 위원

청구인이 요청했던 2018년도 제18차 심의 의결조서가 오늘 아침에 주신 그 두 페이지 짜리 문건이 맞나요? 제18차 건축위원회 조서가 맞나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

지금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재개발사업 이미 건축 중이어서 올해 준공 예정이다, 분양도 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언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전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타임라인을요. 일정상의 절차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000 주무관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건축심의를 진행했고요. 그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랑 건축 인허가 절차를 밟고, 착공을 시작해서 분양까지 작년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

온갖 인허가나 관리계획변경고시 이런 것들도 몇 년 전에 다 끝난 사업이 맞지요?

○ 000 주무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리고 최초 청구에 부서에서 일부 비공개 처분을 하시면서 정보공개법상 7호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들어서 거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비공개 사유는 굉장히 인정되기 어려운 조항이기도 하고, 사실 이게 영업상 비밀인가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거부하는 데 어떠한 정당한 이익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심의 지점인데요.

이번 비공개하는 자료가 대부분 도면, 조감도 이런 것들이어서 사실 이미 공개된 것도 많고, 이런 도면 같은 것들을 비공개하는 사례가 별로 없어서요. 이것을 비공개하려던 취지가 무엇이었고, 이것이 공개될 경우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000 주무관

실제로 이거는 지금 건축심의 때 진행했던 도서를 비공개한 건데요. 그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 때 나왔던 건축 인허가도서라든가 준공도서들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불임에 있듯이 판결에 의해서 지금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만 건축심의도서는 건축 인허가 전에 받았던 심의로서 레이아웃 디자인들이나 아니면 도서 자체의 디자인 같은 것들을 설계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 심의도서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건축심의라는 게 건축 인허가나 준공 때 나왔던 도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공사 진행했던 설계도면과 상이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외부에 공개되는 게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 맞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 000 위원

이 자료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까마는 이게 실제 최종 확정된 도면과 다르다는 거는 제 생각에 청구인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왜 청구하는지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그거와 이게 실제와 다르다라는 것은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작권도 사실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작성한 것이 지금 여기 과에서 작성해서 건축위원회에 보고하신 게 맞지요?

○ 000 주무관

아닙니다. 저희가 이걸 작성한 건 아니고요. 설계회사에서 작성해서 저희 쪽으로는 심의 상정을 요청을 했고, 저희는 심의를 상정한 겁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설계사 이름이 아예 빠져 있네요, 이 문서에는.

○ 000 주무관

심의도서에는 설계사명은 적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설계사의 영업상 비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비공개 사유로 달아주셨던 거 아닌가요, 그러면?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

이게 공개되면 설계사의 경영상 엄청난 큰 뭔가 정당한 이익의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000 주무관

설계사가 고유로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도서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되고, 모든 도서에서 이 정비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축심의도서에서도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비공개하는 사안이고요.

○ 000 위원

그런데 재개발사업에 이런 도면 도서들은 사실 다 공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개하는 게 사실 더 바람직한 측면도 있고요.

여기에 특별히 정말 고도의 엄청 기술적인 보호해야 할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여기 원가정보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대부분이 도면 조감도인 것 같은데요.

○ 000 주무관

그런 거는 지금 조감도나 일반적인 도면이 들어가 있는 건 맞고요. 저희는 행정적 차원에서 이거는 일단은 개인 회사에서 이걸 작성을 하고, 저희 쪽으로 심의검토 의뢰한 사안이니까 저희가 자의적으로 이거를 외부한테 공개하기에도 그 저작권에 대해서 저희가 침해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따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도거나 이런 거를 판단하고 싶으시면 확정된, 허가가 이미 진행된 도서를, 도면을 보는 게 이 청구권자 입장에서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000 위원

당연히 그렇기는 한데요. 이거를 공개 받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유가 뭐냐 이거는 저희는 따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자료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청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당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거 말고 따로 걱정하신 사항은 그러면 더 없으신 건가요?

○ 000 주무관

추가로 여기서 걱정해야 될 사항은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재개발사업 할 때 공개청구 대상인 이 서류를 건축심의 과정에서 제출한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업시행자가 자기 돈 내고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주신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가 돈을 주고 용역을 하신 건가요?

○ 000 주무관

사업시행자가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 진행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조합이 이 건축심의를 받기 위해서, 이런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면 건축사분들, 이런 전문가분들이 건축심의받는 데 필요한 여러 자료로서 만드신 거지요? 지금 이 공개청구 대상 정보가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용역 조합에서 발주할 때 이런 정도면 얼마짜리 용역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000 주무관

건마다 너무 달라서 제가 얼마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대략 전체 공사비의 2%에서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여기 자양1구역 같은 경우 몇 퍼센트인지 추산은 되시나요? 얼마짜리 용역인지요.

○ 000 주무관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 000 위원

하여튼 수억 원대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보고서인 거지요? 용역인 거지요?

○ 000 주무관

수억 원대입니다.

○ 000 위원

따라서 이게 규모가 커지면 수십억도 될 수 있는 거고요?

○ 000 주무관

네.

○ 000 위원장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담당자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심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000 위원

일단 부서에서는 7호 하나만 사유를 가지고 비공개를 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정보공개 소송에서 법원이 취한 입장을 봐도 7호는 다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단순히 영업상 비밀인지도 모호한데,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비공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느냐가 아까 제가 주무관님께 질문드렸을 때도 그것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린 것처럼 법원도 그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재개발사업이고, 사실 이게 되면 조감도인데 그렇게 상세도면도 아니고, 여기에 특별히 원가정보 같은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 분양하면서 주민설명회도 여러 번 하고 이랬는데 그때 대부분 공개됐었던 자료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다 확정돼서 올해 중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공개하는 것에 어떠한 침해가 있는 것인지를 제가 소명이 잘 안 됐다고 느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여쭙봤었고요.

그리고 저작권을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서울시가 작성하지 않은 제3자가 작성한 건 전부 다 제3자의 저작권이 있는 자료지요. 그런데 저작권이 있다는 거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고려 사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법률에 충실해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봤을 때요. 물론 분량이 많은 300페이지짜리 자료여서 다들 부담감이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본 결과로는 특별히 이걸 비공개할 이유가 보이지는 않아서요.

그리고 이미 이게 분양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그런 다른 호의 비공개 사항에도 문제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이의신청 인용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장

서류 전체 다 인용, 심의도서 전체를 다 인용하는 의견이시지요?

○ 000 위원

네.

○ 000 위원장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기 전예요. 사실 이런 사안의 경우에 영업상 비밀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영업상 노하우에 관한 거는 정당한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더 여쭙보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 000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계속 찾아봤는데 이런 건축물, 도서, 도면 이런 것들은 사실 원가자료도 비공개 사유 인정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앞으로 더 공개되는 추세이기도 하고, 법원의 추세가요. 그래서 특히 이런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더 적극적으로 공개가 되고, 소극적으로 법원이 해석하고 있어서요. 저도 관련 선례를 보고 말씀드린 거라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000 위원장

확정된 서울시의 확정된 정책이나 결정은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재건축 여기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다르다고 생각은 되고요.

또 뒤에 아마 국민권익위에 상정됐던 사항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도 아마 비공개로 판단한 사례가 있어서 이걸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다른 위원님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위원장님, 판례 얘기를 조금 전에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관련 판례가 있나요?

○ 000 위원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심의개요 다음 페이지 보면 유사사례가 있는데요. 설계서, 도면, 시방서 등등 이런 사안에 대해서 비공개로 판단한 사례도 있어서 권익위 중앙행심 사건 같습니다. 2021년도 18611 사건 같은데요. 재결 사건이고요.

○ 000 위원

네.

○ 000 위원장

제가 보기에선 예컨대 이것도 우리 정보공개 심의 이후에는 중앙행심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이고 이래서 이거를 볼 때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미 지금 볼 때 심의의결조서는 다 공개가 됐고, 다만 여기 심의도서 부분은 아까 말한 외부에 용역을 줘서 만든 거고, 그 업체의 고유한 그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통해서 어떤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서울시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공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마 영업상 노하우 이 부분은 대부분 영업상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익에 해당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 000 위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중앙) 2021-18611 이 부분공개 결정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000 위원장

네. 완전히 똑같은지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민간 건설업체가 작성한 거고, 노하우로 인정된다는 재결 같습니다.

○ 000 위원

그래서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면 뭔가 명쾌하게 딱 자르기 어려운 생각은 드는데요. 국민권익위 취지를 보면 2021년 이 재결례를 보면 이게 민간업체가 작성한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이라고 인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비공개자료인 300페이지에 달하는 최초나 최종 도서에도 들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청구인이 로펌인 것 같은데,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변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리인이신 거지요, 이 로펌이?

○ 000 위원장

그런 걸로 보입니다.

○ 000 위원

아파트 입주하실 분들을 대표해서 로펌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데 그래서 저는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중앙행심의 선례에 따르면.

그리고 이게 건축심의도서니까 사업시행계획 인가할 때 환경영향평거나 건축법상의 건축심이나 다 통합해서 심의한 그거 같거든요. 그래서 최초도 그렇고 최종도 그렇고 분명히 맨 나중에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그 이후로도 변할 여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최종본이나, 이대로 중간에 변하지 않은 건가요?

○ 000 위원장

조금 다른 내용이 있다고 아까 설명을 하였습니다.

○ 000 위원

지금 이 비공개자료 최초 최종 하고 나중에 준공된 그 상태에서는 좀 다른 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과정을 결국은 입주자들께서는 알고 싶다 이겁데요. 하여튼 입주자 입장에서선 최초에 건축심의를 받았던 게 중간에 어떻게 바뀌어서 결국은 현실적으로 왜 이런 건축물이 들어섰는가 이렇게 아마 다두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정보를 다 공개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중앙행심 재결을 보면 영업상 비밀로 인정돼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다인 건 아닌 것 같거든요, 300페이지 전부가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요.

○ 000 위원장

하지만 그 많은 분량을 저희가 분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분리가 가능하면 부분공개로 하면 되는데요.

○ 000 위원

그렇지요. 분리가 쉽고, 저희 눈에도 가능하면 이렇게 여기까지만 공개하고 여기는 비공개 이렇게 갈라서 의결을 해 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주제라는 생각이 항상 이런 설계도면 관련해서는 드는데요. 일단은 재결례에 따라서 그냥 비공개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기각 의견 주셨고요.

○ 000 위원

주심위원님 말씀도 그런데 타당한 면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의견도 일리는 충분히 있지만, 이제 좀 곤란한 점이 있다는 점도 같이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000 위원

저도 전반적으로는 주심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또 일부 부분은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 일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가 있었던 대로 저희가 그거를 잘 구별해낼 수 있을지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부분이 공개할 부분이 있긴 한데, 만약에 구분을 못 한다면 기각하는 의견으로 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장

여기에 공개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많은 양을 다 우리가 분리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

부분공개가 어려울 때는 기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 000 위원

그렇습니다.

○ 000 위원

저도 현실적으로는 주심위원님 의견에 동조를 하는데요. 이런 게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걸 분리할 수 있을지는 저도 사실, 그게 또 우리가 분리해야 되는 건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기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주심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은 갑니다.

○ 000 위원장

주심위원님 의견을 주셔서 이걸 반대 의견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주심위원님 의견처럼 이걸 공개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이걸 저희가 공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아마 제3자에 대한 의견을 전혀 묻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아마 용역을 줬서 작성한 건설업체나 여기에 대해서요.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심위원님은 지금 인용 의견으로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 000 위원

저는 인용 의견이고요.

이게 지금 바뀌었다는 거를 알고 이분이 청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안과 그 중간단계를 특정해서 그것을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게 지금과 다르다라는 게. 이게 검토 과정 중이라면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미 다 종결된 상황에서 이것을 공개함으로써 생기는 침해적인 부분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문건을 보면 우리가 영업활동에 대한 일체의 정보가 다 비공개 사유가 되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자료는 심지어 작성자가 누구인지 업체가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여기에 그렇게 기술적인 얼마나 고도의 노하우가 집적된 것인지, 여기서 계속 일부가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부라고 말씀하신 게 뭔지 사실 저는 어떻게 구분하신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견 유지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십시오.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영업상 비밀로 비공개를 할 부분도 이렇게 저희가 구분하기도 어렵지만, 아니라고 하는 부분도 그걸 좀 특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심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는데, 저도 지금 이거는 분리하기가 많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3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각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네 분이 기각 의견이고, 주심위원님은 인용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결하도록 하고, 기각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의결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4명이 기각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4-14호**는 비공개 사유 7호에 따라 영업상 비밀로 보아서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안번호 2024-15] : 2024년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1차 공모사업 심사 결과보고 (장애인복지정책과-2333, 2024.02.02.)

○ 000 위원장

의안번호 제2024-15호 장애인복지정책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 000 위원

이게 2024년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1차 공모사업 심사 결과보고 문서 중에서 제
개인정보를 빼고 나머지 전부를 붙임자료까지 해서 공개를 해달라는 내용이지요?

○ 000 팀장

네.

○ 000 위원

여기 지금 청구인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전에 한 3개년 동안에는 보조금관리위원회 같
은 그런 제도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올해 처음 도입을 한 겁니까?

○ 000 팀장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전년도에도 심의는 했었고요.

심의는 했었는데 서면심의를 했어요. 서면심의로 해서만 진행을 했고, 올해부터 그 요
건을 좀 강화해서 1차로 서면심의하고, 그다음에 2차로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 확
인하고, 그다음에 3차로 단체에서 와서 발표를 해서 심사하는 그 과정을 만들었어요.

○ 000 위원

붙임자료 3번 위원별심사표, 4번 의결서, 5번 청렴서약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이 부
분 여기 보면 수기로 작성된 의결서하고, 위원별심사표 이런 것 중에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삭제를 하더라도 이게 심사위원 풀이 약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필적이 식
별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런 부분을 적시를 하셨더라고요.

○ 000 팀장

네.

○ 000 위원

저희 비공개 사유 보면 수기로 작성된 의결서하고 위원별심사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개인 필적이 식별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부분을 갖다 적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붙임3 위원별심사표, 붙임4 의결서, 붙임5 청렴서약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부분에 수기가 보이는데요. 명확히 지금 이걸 통해서 어느 부분이 개인 필적이 식별될 부분인지가 정확히 보이지 않아서요.

그냥 붙임4에도 의결서 보면 마지막에 위원장님이 조건 1, 2 해서 그 부분 정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다른 부분이 또 있나요?

○ 000 팀장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먼저 쓴 거는 서울시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안 그 기준에 있었기 때문에 1차로 저희가 먼저 이거를 써놓은 거고요.

사실은 이 사업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1차가 지금 진행이 됐고, 이 결과보고서 안에는 이런 개인들에 대한 점수뿐만 아니라 심사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심사표는 2차, 3차에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쪽에 청구하신 분이 3차에는 그대로 응모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돼요.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이 됐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000 위원

그러니까 1차로 응모해서 만약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2차, 3차를 응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이?

○ 000 팀장

자격조건이 되면 할 수 있다는 거지요.

○ 000 위원

청구인이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 000 팀장

위원에 대한 명단입니다.

○ 000 위원

개인정보만 삭제해달라는 겁니까? 그리고 나머지 다 전체입니까? 청구한 내용이요.

○ 000 팀장

전체를 다 달라는 내용이에요.

○ 000 위원

이 결과보고서에 나오는 심사기준이 그 당사자들한테 미리 공개되는 심사기준이 아닌가요?

○ 000 팀장

아닙니다.

○ 000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20개고, 그중에 하나에 해당하시는 게 청구인분들이신데 이 단체 당사자들에게는 본인 점수가 통지가 됐나요? 선정되든 안 되든.

○ 000 팀장

점수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지원이 됐다 안 됐다 이것만 통지가 됩니까? 그러면 점수는 통지 안 됐다 말씀하신 게 맞으시지요?

○ 000 팀장

통지 안 됐습니다. 최종 선정된 내역들만 통보가 됐습니다.

○ 000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심사기준이 혹시 다른 내규 같은 데 나오는 기준인가요?

○ 000 팀장

저희 보조금관리위원회 지침에 있는 내용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작년에 보조금 심의했을 때 나왔던 내용들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장애인정책과에서 조금 변형해서 사용하신 건가요?

○ 000 팀장

네, 약간. 부분은요.

○ 000 위원장

제가 궁금한 거는 공문 중에 1차 공모사업 심사 결과보고 여기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명단을 공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나머지 심의개요라든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2차 심사방법 이런 거는 공개해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 000 팀장

그 정도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거를 이미 알려줬어요. 정보공개심의회 하기 전에 저희한테 민원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량하고 정성 평가비율, 정성 기준에서 큰 타이틀에 대해서는 이미 공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70점 미만이 되어서 안 됐다라는 것들을 공지를 했어요. 그 이후에 정보공개청구를 또다시 한 것입니다.

○ 000 위원장

그래서 애초에 그런 정도라도 부분공개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 여기 지금 나머지 사항은 조금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문제는 되지만, 공문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사항들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세부 심의 내용은 다 알려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일단 팀장님은 잠깐 나가 주시고, 저희가 의결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장

주심위원님, 먼저 의견 주십시오.

○ 000 위원

기본적인 사항은 또 알려주셨다고 하고, 이름을 지우더라도 다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뭐 신청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인 것 같은데요. 그런 사유가 있다 그러면 비공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 000 위원

저도 주심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 000 위원

저는 공개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부분공개 의견이고요.

결과보고서에서 1페이지에 심사위원 명단이랑 그리고 심사결과표 이렇게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붙임 중에서도 의결서도 그 밑에 위원 이름 나오는 거 말고는 비공개 사유가 없는 것 같고요. 청렴서약서도 사실 이름 말고는 의미가 없는 거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심사위원들 이름을 제외하고는 부분공개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

저도 주심위원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저도 주심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내용을 미리 알려주시면 좋는데 나중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다 나왔기 때문에 부분공개한다 하더라도 실익은 조금 적을 것 같고요. 기각으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결할까요? 기각으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저희가 의결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고, 1명은 부분인용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4-15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